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92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서영석·김영환·박민규

박홍배 • 박해철 • 허성무

박지혜 • 전용기 • 이건태

김선민 · 서미화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(IQ)가 71~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·취업·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·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 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·개입, 맞춤형 교육, 자립·고용·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 조).
- 나. "경계선지능인"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,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 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(안 제2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라.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 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,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18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, 교육, 자립, 고용·직업훈련,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제19조부터 제25조까지).

- 사.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·연구,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26조).
- 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).
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경계선지능인"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,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경계선지능인의 권리)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・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,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 존중 및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가정의 책임) 가정은 경계선지능인의 성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, 경계선지능인이 자기 발전을 실현

하고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여건을 조성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

-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
 - 2.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 - 3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
 - 4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 - 6. 경계선지능인의 교육·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 - 7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의 협조 요청) ① 보건복지부 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 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

조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,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권리보장 및 지원

- 제12조(자기결정권의 보장)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결정,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,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경계선지능인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

자(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경계선지능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형사·사법 절차상 권리보장)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, 제26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또는 제27조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"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"라 한다)의 임직원,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, 그 보호자, 검사 또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의사소통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경계선지능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개발하고 원

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사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담당 직원이 경계선지능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사소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지원신청 등) ①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지원(이하 "지원서비스"라 한다)을 받으려는 경계선지능인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 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"개인별지원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 및

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개인별지원계획 수립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27조에 따른 지역경계 선지능인지원센터(이하 "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"라 한다)의 장에 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.
 -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 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개인별지

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제 15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절차를 따른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) ①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"지원서비스제공기관"이라 한다)을 연계하여야 한다.
 -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이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제공 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·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조기진단 및 개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,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

- 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,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7조의 청소년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·돌봄·보호 등을 위한 기관·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및 개입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·청소년(이하 "경계선지능아동"이라 한다)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,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 방과

-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,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20조(자립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거나 경제·법률·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 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,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 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

-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자녀양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교육과정의 내용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4조(의료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 련,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25조(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 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

- 제26조(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·취업·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
 - 2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·편람 마련
 - 3.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
 - 4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
 - 5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

- 6.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
- 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기능,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·직무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) ①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 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- 2.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
 - 4. 관할 지역 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 - 5.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
 - 6.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
- 7.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
- 8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
- 9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기능,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·직무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28조(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29조(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

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통합지원체계의 업무와 기관·단체의 범위 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· 도 및 시·군·구에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워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, 전담공무원, 전문인력의 배치 등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0조(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)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.
 -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.

- 제31조(관련 단체의 보호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 능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 및 벌칙

- 제32조(비밀유지 의무)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3조(지도와 감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서 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- 제34조(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35조(벌칙)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6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7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8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・

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